



대 구 지 방 법 원

제 4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3노3579 가.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나.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피 고 인	1.가. E 2.가. H 3.가. I 4.가. K 5.가.나. Q
항 소 인	피고인들
검 사	최자윤, 이소현(기소), 최자윤(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상화(피고인 Q를 위한 국선)
원 심 판 결	대구지방법원 2023. 8. 24. 선고 2023고단1249, 2023고단1254(병 합) 판결
판 결 선 고	2023. 11. 22.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E, H, I, K에 대한 추징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E으로부터 5,261,333원을, 피고인 H으로부터 5,243,866원을, 피고인 I로부터 4,488,107원을, 피고인 K으로부터 4,518,833원을 각 주장한다.

피고인 E, H, I, K에게 위 주장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Q의 항소 및 원심판결 중 위 파기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피고인 E, H, I, K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피고인 I)

추정금에 관하여, 추정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피고인이 수취한 이자는 채무자들의 상환금액에서 대부원금인 실지금액을 공제한 범위 내에서 인정되어야 함에도 원심은 약정이자 전액을 피고인이 수취한 이자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 그리고 피고인은 총책인 V, W로부터 2021년 7월분 월급(수익)을 정산 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추정액을 산정함에 있어 2021년 7월 원리금 상환된 부분은 제외하여야 한다.

나. 양형부당(피고인 E, H, I, Q)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E: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10,585,598원 추정, 피고인 H: 벌금 600만 원, 9,571,427원 추정, 피고인 I: 벌금 600만 원, 8,444,732원 추정, 피고인 Q: 징역 1년 4개월, 몰수, 809,899원 추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K의 항소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따르면, 피고인 K은 2023. 9. 12. 이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았음에도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항소장에도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다.



그러나 아래 제4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심판결 중 피고인 K에 대한 추정 부분에 대하여는 직권과기사유가 있으므로, 항소이유서 미제출을 이유로 피고인 K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지는 않는다.

3.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수사기관은 피고인들이 참여한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 메시지 중 영업실적을 보고한 내용 등을 토대로 피고인들이 채무자들로부터 수취한 이자 등에 관한 범죄일람표를 작성하였고, 몇 차례의 수정을 거쳐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범죄일람표가 변경되었다. 검사는 최종 범죄일람표를 기준으로 피고인들의 수익분배 구조에 대입하여 피고인별 범죄수익금을 산정하였고(증거목록 순번 396 내지 404), 원심은 이를 그대로 인정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추정을 명하였다.

① 채무자들이 대부계약 당시 작성한 차용증을 기준으로 '계약 대출금'을 특정하였고, 이는 피고인들이 채무자들에게 실제 교부한 '실지금액'과 대부계약상 사전 공제된 이자 금액인 '약정이자'를 합한 금액이다.

② 피고인들이 채무자들에게 교부한 실지금액을 원금(원본)으로, 채무자들이 상환한 원금 및 이자를 '총 상환금액'으로 특정하고, '총 수취이자'는 약정이자, 연체이자 등 피고인들이 수취한 모든 이자를 합한 금액이다.

③ 총 수취이자에서 법정 최고이자를 공제한 금액을 피고인들의 범죄수익금으로 보았다. 다만, i) 피고인들이 실제로 취득하지 않은 선이자(약정이자)를 범죄수익금으로 산정하는 것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하다고 보아 이를 제외하였고(증거목록 순번 372),



ii) 채무자들로부터 대부계약 이후 원리금, 이자 모두 수취하지 않은 경우 '미상환'으로 취급하여 범죄일람표에서 삭제하였으며(증거목록 순번 391, 398), iii) 채무자들이 실지 금액(대부원금)과 같거나 적은 금액을 상환하고 채무 종결하였다고 진술하는 경우 피고인들이 수취한 이자가 없다고 보아¹⁾ 범죄일람표에서 삭제하였다(증거목록 순번 391, 448).

2) 당심의 판단

가) 관련 법리

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2. 1. 4.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라고 한다) 제10조 제1항에 따라 추정할 수 있는 범죄수익은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 등을 의미한다(같은 법 제2조 제2호 가목). 구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별표 제32호는 '대부업법 제19조 제2항 제3호의 죄'를 중대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법정이자율 초과 수취로 인한 대부업법 위반 부분의 공소사실은 대부업자인 피고인들이 대부업법 제19조 제2항 제3호, 제8조를 위반하여 법정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았다는 것이므로 이는 구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한다. 따라서 대부업자인 피고인들이 법정이자율을 초과하여 받은 이자는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법정이자율 초과 수취로 인한 대부업법 위반죄로 인하여 취득한 재산으로, 구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2조 제2호에 정한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에 해당하여 추정 대상에 해당한다.

한편 채무자가 1개 또는 수개의 채무의 비용 및 이자를 지급할 경우에 변제자가

1) 명시적으로 근거를 밝히지 않았으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이라고 한다)에서 채무자가 대부업자에게 법정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금액은 원본에 충당되고, 원본에 충당되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규정(같은 법 제8조 제5항)에 근거한 것으로 보인다.



그 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한 급여를 한 때에는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변제에 충당하여야 한다(민법 제479조 제1항). 그런데 채무자가 대부업자에게 법정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금액은 원본에 충당되고, 원본에 충당되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대부업법 제8조 제5항).

구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의 추징은 부정한 이익을 박탈하여 이를 보유하지 못하게 함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고, 수인이 공동으로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분배받은 금원, 즉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금만을 개별적으로 몰수·추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도2451 판결, 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도794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V은 대부업체를 운영하면서 시제금 등 대부 영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고 대부 영업 방식을 정하며 수익금을 관리·배분하는 등 총책의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I은 중간 관리자인 W의 팀에 소속되어 직접 대부 영업을 하는 역할을 분담한 사실, V은 수사기관에서 대부 영업을 통해 회수된 이자 등을 말일 기준으로 정산해서 직원들에게 월급을 주었고, 2021년 7월에는 W 및 그 팀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 월에 상환된 이자수익 전체(2,165만 원)를 본인이 가져갔다고 진술한 사실 및 이에 따라 수사기관은 2021. 7. 1.부터 2021. 7. 31.까지 상환된 이자 수익금 전액을 V의 범죄수익금에 포함시켜 V의 범죄수익금을 총 165,585,750원으로 산정한 사실, V의 변호인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2021년 6월분 급여(수익) 내역에는 피고인 E에게 480만 원을, 피고인 I에게 480만 원을, 피고인 K에게 300만 원을 각 지급한 것으로 기재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증거목록 순번 329, 393, 피고인 I이 2023. 10. 25. 이 법원에 제출한 참고자료).



위 인정사실을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총 상환금액(A)'에서 제한이자율에 해당하는 이자(B)와 대출원금인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의 '실지금액(C)'을 공제한 금액(= A - B - C)이 양수일 경우의 합산 금액(단, 2021. 7. 1. 이후에 원리금 상환이 이루어진 부분을 제외한다)을 피고인 I으로부터 추정할 범죄수익으로 봄이 상당하다. 이에 따라 피고인 I에 대한 범죄일람표3 중 범죄수익에서 제외되어야 할 부분은 다음과 같다.

① 범죄일람표3 순번 44, 50, 65, 66, 68, 69, 74, 78, 79는 채무자들이 실지금액과 같거나 적은 금액을 상환한 경우임에도 피고인 I이 약정이자(선이자 공제 부분)를 수취하였다고 인정한 것으로서, 앞서 본 수사기관의 범죄일람표 작성 기준에 따르면 이와 같은 경우 피고인들이 수취한 이자가 없는 것으로 보아 범죄일람표에서 삭제하였던 것과 부합되지 않고, 이러한 경우 범죄일람표에서 제외하여 범죄수익에 포함시키지 않은 다른 공동피고인들과의 형평에도 맞지 않는다.

② 범죄일람표3 순번 31, 64는 채무자들이 대부계약상 원리금 중 일부만 상환한 경우 피고인 I이 약정이자(선이자 공제 부분)를 수취하였다고 인정한 것이나, 범죄일람표3의 순번 1, 21, 24 등 같은 범죄일람표의 다른 대부계약 및 다른 공동피고인들에 대한 범죄일람표에는 이러한 경우 실제로 취득하지 못한 선이자(약정이자)를 범죄수익금에서 제외한다는 취지에 따라 '총 상환금액'에서 '실지금액'을 공제한 금액만 범죄수익으로 인정한 것과 비교하면 일관성이 없고 다른 공동피고인들과의 형평에도 맞지 않는다.

③ 범죄일람표 순번 5, 23, 31, 49 내지 51, 53, 55 내지 81은 2021. 7. 1. 이후에 원리금 상환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피고인 I은 이에 대한 정산을 받지 못하였는바 실질



적 이익이 위 피고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I에 대하여는 4,488,107원²⁾을 추정액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피고인 I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있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두루 참작하였고, 특히 피고인 Q는 이 사건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범행이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것임을 알게 되었음에도 계속 범행에 나아간 점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피고인 Q가 당심에서 이 사건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해자 10명에 대하여 각 10만 원씩 공탁하였으나, 앞서 살펴본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를 원심과 양형 판단을 달리할 정도로 의미 있는 새로운 정상으로 삼기 어렵고, 달리 원심판결 선고 이후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직권 판단(추징금 관련)

앞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서 살핀바와 같이,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총상환금액(A)'에서 제한이자율에 해당하는 이자(B)와 대출원금인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

2) 산출식 : (피고인 I 총 수취이자 9,030,000원 - 법정최고이자 53,786원) × 피고인 I 수익배분율 50%



람표의 '실지금액(C)'을 공제한 금액(= A - B - C)이 양수일 경우의 합산 금액(단, 2021.

7. 1. 이후에 원리금 상환이 이루어진 부분을 제외한다)을 피고인들로부터 추정할 범죄 수익으로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 E에 대하여는 5,261,333원³⁾을, 피고인 H에 대하여는 5,243,866원⁴⁾을, 피고인 K에 대하여는 4,518,833원⁵⁾을, 피고인 Q에 대하여는 809,899원⁶⁾을 각 추정액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피고인 E, H, K에 대한 추정 부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피고인 Q 제외)에 대한 추정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의 항소가 일부 이유 있거나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 6항에 따라 위 부분을 파기하고[파기의 범위와 관련하여 주형과 몰수 또는 추징을 선고한 원심판결 중 몰수 또는 추징 부분에 관해서만 파기 사유가 있을 때는 항소심은 그 부분만을 파기할 수 있다(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5822 판결 등 참조)], 피고인 Q의 항소 및 원심판결 중 위 파기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관한 피고인 E, H, I, K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형한

- 3) 산출식 : (피고인 E 총 수취이자 10,040,000원 - 법정최고이자 62,203원) × 피고인 E의 수익배분율 50% + (조원인 피고인 Q가 법정이자율을 초과하여 수취한 이자의 10%인 272,435원)
- 4) 산출식 : (피고인 H 총 수취이자 9,050,000원 - 법정최고이자 53,622원) × 피고인 H의 수익배분율 50% + (조원인 원심 공동 피고인 홍현기가 법정이자율을 초과하여 수취한 이자의 10%인 745,677원)
- 5) 산출식 : (피고인 K 총 수취이자 9,100,000원 - 법정최고이자 62,334원) × 피고인 K의 수익배분율 50%
- 6) 위 산출식에 따르면, 피고인 Q에 대한 추정액은 1,089,740원[(피고인 Q 총 수취이자 2,740,000원 - 법정최고이자 15,649원) × 피고인 Q의 수익배분율 40%]에 해당하나, 피고인 Q만 항소한 이 사건에서 원심판결 중 피고인 Q에 대한 추정 부분을 파기하는 것은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반할 여지가 있으므로, 원심판결의 추정금 그대로 인정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10-15

판사 김수철 _____

판사 배종빈 _____